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68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상속세 · 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엄태영의원안)	2

I. 개요

1.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6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20.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속세·증여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임태영의원안)

현행	임태영의원안	정부안	권성동의원안																																										
☐ 상속세 세율 (제26조)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u>1억원 이하</u></td><td><u>10</u></td></tr><tr><td><u>~ 5억원</u></td><td><u>20</u></td></tr><tr><td><u>~ 10억원</u></td><td><u>30</u></td></tr><tr><td><u>~ 30억원</u></td><td><u>40</u></td></tr><tr><td><u>30억원 초과</u></td><td><u>50</u></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u>1억원 이하</u>	<u>10</u>	<u>~ 5억원</u>	<u>20</u>	<u>~ 10억원</u>	<u>30</u>	<u>~ 30억원</u>	<u>40</u>	<u>30억원 초과</u>	<u>50</u>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u>1억원 이하</u></td><td><u>10</u></td></tr><tr><td><u>~ 30억원</u></td><td><u>20</u></td></tr><tr><td><u>30억원 초과</u></td><td><u>30</u></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u>1억원 이하</u>	<u>10</u>	<u>~ 30억원</u>	<u>20</u>	<u>30억원 초과</u>	<u>30</u>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u>2억원 이하</u></td><td><u>10</u></td></tr><tr><td><u>~ 5억원</u></td><td><u>20</u></td></tr><tr><td><u>~ 10억원</u></td><td><u>30</u></td></tr><tr><td><u>10억원 초과</u></td><td><u>40</u></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u>2억원 이하</u>	<u>10</u>	<u>~ 5억원</u>	<u>20</u>	<u>~ 10억원</u>	<u>30</u>	<u>10억원 초과</u>	<u>40</u>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u>1억원 이하</u></td><td><u>5</u></td></tr><tr><td><u>~ 5억원</u></td><td><u>10</u></td></tr><tr><td><u>~ 10억원</u></td><td><u>20</u></td></tr><tr><td><u>~ 30억원</u></td><td><u>30</u></td></tr><tr><td><u>30억원 초과</u></td><td><u>40</u></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u>1억원 이하</u>	<u>5</u>	<u>~ 5억원</u>	<u>10</u>	<u>~ 10억원</u>	<u>20</u>	<u>~ 30억원</u>	<u>30</u>	<u>30억원 초과</u>	<u>40</u>
과세표준	세율																																												
<u>1억원 이하</u>	<u>10</u>																																												
<u>~ 5억원</u>	<u>20</u>																																												
<u>~ 10억원</u>	<u>30</u>																																												
<u>~ 30억원</u>	<u>40</u>																																												
<u>30억원 초과</u>	<u>50</u>																																												
과세표준	세율																																												
<u>1억원 이하</u>	<u>10</u>																																												
<u>~ 30억원</u>	<u>20</u>																																												
<u>30억원 초과</u>	<u>30</u>																																												
과세표준	세율																																												
<u>2억원 이하</u>	<u>10</u>																																												
<u>~ 5억원</u>	<u>20</u>																																												
<u>~ 10억원</u>	<u>30</u>																																												
<u>10억원 초과</u>	<u>40</u>																																												
과세표준	세율																																												
<u>1억원 이하</u>	<u>5</u>																																												
<u>~ 5억원</u>	<u>10</u>																																												
<u>~ 10억원</u>	<u>20</u>																																												
<u>~ 30억원</u>	<u>30</u>																																												
<u>30억원 초과</u>	<u>40</u>																																												
☐ 증여세 세율 (제56조) ☐ 증여세 세율: 제 26조의 세율 적용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증여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임태영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68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5), 권성동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77)

☐ 3건의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함으로써 상속인과 수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임태영의원안은 현행 20%~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과세표준 1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단일화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하여 현행 50%에서 30%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

을 삭제하여,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시 40%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권성동의원안은 과표구간은 현행과 같이 하되, 현행세율에서 1억원 이하 과표구간은 5%p를, 그 외의 구간은 10%p 경감한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증여세”라 함)의 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연혁]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10%
0.5억원~2.5억원	20%	1억원~5억원	20%	1억원~5억원	20%
2.5억원~5.5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억원~10억원	30%
5.5억원 초과	40%	10억원~50억원	40%	10억원~30억원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세입확충이라는 조세 본유의 국고기능 이외에 복합적인 경제적·사회정책적 기능의 수행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속세제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① 상속세는 과세기법의 발달로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조세로서의

기능이 예전보다 감소한 반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사망 시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로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재산을 일궈온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자의 것보다 누진적으로 많이 과세함으로써 자본축적, 자산의 이전 및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여 경제활력을 저해하므로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② 상속세는 소득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이 아닌 상당한 재산을 무상취득한 일부 부유한 상속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중복과세가 아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교육의 기회가 약화되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의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므로 상속세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러한 상속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¹⁾고 하며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상속세의 이러한 소득

1)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재분배 기능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끊임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상속세에 관한 논쟁은 비단 이러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둘러싸고, 제한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경쟁 및 경합관계에 있는 사회구성원 간의 출발점의 공평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논쟁 또한 내포하고 있어 상속세제에 대한 정책결정은 본질적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숙의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제의 변경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경제질서 및 사회철학적 가치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기저로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이하에서 기술하는 상속세제의 부담 완화 주장과 그 반대 입장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상속증여세율의 인하 및 세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기업경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고용의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상속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일부 실증 연구²⁾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결과³⁾에 근거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2)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0. 10., 송헌재·조하영)
“Inheritance Law and Investment in Family Firms”(2010, Ellul·Pagano·Panunzi)

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과도한 세부담은 많은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부유층의 생산동기를 저하시켜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로 인한 생산력 증대 및 혁신에 대한 기회의 제약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따른 저소득층의 후생 증대 기회마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임.

둘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은 2000년에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세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대비 1.76배로 증가하였고, 2023년 1월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00년 1월 대비 종합주택의 경우 2.13배, 아파트의 경우 2.68배로 각각 증가하였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3
소비자물가지수	63.151	74.413	86.373	94.861	100	111.5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2020년=100 기준

- 3) 수출기업 799개 중 74.3%가 가업승계 이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중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지적 (한국무역협회, '24.1월)
수출기업 799개 중 42.2%가 상속세, 증여세 납부부담 등 제반 가업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국무역협회, '24.1월)
중소기업 625개 중 65.3%가 기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에서 ‘높은 세금부담’을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23.4월)
30~40대 벤처 CEO 140명 중 대부분이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 (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 (경총, '23.10월)

[주택 매매가격지]

구분	2000.1	2005.1	2010.1	2015.1	2021.6	2023.1
종합주택	46.0	60.8	76.4	84.9	100.0	98.2
아파트	35.8	55.2	70.8	82.3	100.0	96.1

*종합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6월=100 기준

한편, 같은 기간 상속증여세수는 2000년 1조원 규모에서 2023년 14.6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에서 상속증여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6%에서 2023년 4.25%로 4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상속공제 수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⁴⁾.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추이]

(단위: 조)

구분	'00	'05	'10	'15	'20	'21	'22	'23
국세(A)	92.9	127.5	177.7	217.9	285.5	344.1	395.9	344.1
상증세(B)	1.0	1.9	3.1	5.0	10.4	15.0	14.6	14.6
비중(=B/A)	1.06%	1.47%	1.73%	2.31%	3.63%	4.36%	3.69%	4.25%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OECD 등 국제비교 시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이 높아 자산가들의 해외이민, 기업의 해외이전 등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임⁵⁾.

4) 과세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재산은닉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점도 있을 것임.

5) KNN, “세계 최고 ‘상속세율’ … 경영권 팔거나 해외로”, 2018. 11. 21.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경우 6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고,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상속세를 두고 있는 24개 국가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평균 26%로 조사됨⁶⁾.

또한,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은 2022년 기준 0.7%로, OECD 평균 0.2%에 비해 0.5%p 높고, G7 국가 평균 0.3%에 비해서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중 또한 2022년 기준 2.1%로 OECD 평균 0.4%에 비해서는 1.7%p 높고, G7 국가 평균 0.6%에 비해서도 1.5%p 높은 것으로 조사됨⁷⁾.

[명목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0.3	0.4	0.4	0.5	0.7	0.7	0.4
OECD 평균		0.1	0.1	0.1	0.1	0.1	0.2	0.1
G7	G7 평균	0.2	0.2	0.2	0.2	0.3	0.3	0.1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프랑스	0.5	0.6	0.6	0.6	0.7	0.7	0.2
	독일	0.2	0.2	0.2	0.3	0.3	0.2	0.1
	이탈리아	0.0	0.0	0.0	0.0	0.0	0.1	0.1
	일본	0.3	0.4	0.4	0.4	0.5	0.5	0.2
	영국	0.2	0.2	0.2	0.2	0.3	0.3	0.1
	미국	0.2	0.1	0.1	0.1	0.1	0.2	0.0

주: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와 그리스를 제외한 평균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일본 55%, 대한민국 5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 프랑스 45%, 미국·영국 40%, 독일 30%.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 26%, 기획재정부

7)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314-315p.,

[총조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이 (2022-2013)
한국		1.2	1.5	1.6	1.9	2.4	2.1	0.9
OECD 평균		0.3	0.3	0.4	0.4	0.4	0.4	0.1
G7	G7 평균	0.3	0.7	0.6	0.7	0.8	0.6	0.0
	캐나다	0.0	0.0	0.0	0.0	0.1	0.1	0.0
	프랑스	1.1	1.3	1.4	1.4	1.6	1.5	0.4
	독일	0.4	0.5	0.5	0.7	0.7	0.6	0.2
	이탈리아	0.1	0.1	0.1	0.1	0.1	0.1	0.0
	일본	1.1	1.3	1.3	1.3	1.5	-	0.4
	영국	0.6	0.8	0.7	0.8	0.8	0.8	0.2
미국		0.6	0.5	0.4	0.5	0.6	0.6	0.0

주: 1. 2022년 OECD 평균은 호주, 그리스 및 일본을 제외한 평균이며, G7 평균은 일본을 제외한 평균임

2. 일본은 2021년과 2013년 차이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ECD 회원국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4개국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이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오스트리아·체코·이스라엘 등의 7개국은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⁸⁾.

[OECD 주요국의 상속 관련 과세 체계]

구분		국가
상속증여세 과세 국가	유산취득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20개국
	유산세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 소득세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

8)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314p.

상속세 부담의 완화에 대한 주장은 국제조세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이와 같은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자산가의 이민과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임.

□ 반면, 상속증여세율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억제하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임.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평균 -666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1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⁹⁾는 2017년 0.584에서 2022년 0.606으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2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5,602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903	-0.2
순자산 2분위	2,565	0.8	2,922	0.6
순자산 3분위	6,187	2.0	7,510	1.6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86	2.9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558	4.5
순자산 6분위	22,050	7.0	29,336	6.4
순자산 7분위	29,536	9.4	41,381	9.1

9)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2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8,816	12.9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6,731	19.0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6,226	43.0

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와 같이 자산불평등도가 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정부안의 경우 세율인하 효과가 가장 부유한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임. 정부안은 과세표준 1억 초과 2억원 이하인 구간을 제외하면 최고 과세표준 구간인 3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인하 효과가 집중되어 있는 이른바 ‘부자감세’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것임.

[정부안 세율인하 효과]

과표구간	세율 변동	세율인하 폭
1억 이하	10% → 10%	—
1억 초과 2억 이하	20% → 10%	△ 10%
2억 초과 5억 이하	20% → 20%	—
5억 초과 10억이하	30% →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 40%	—
30억 초과	50% → 40%	△ 10%

둘째,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나, 총상속재산가액이 매우 높은 일부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높은 편이 아니며, 세부담 수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023년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인적·물적 상속공제 적용 전) 기준 23.1%, 과세표준(인적·물적 상속공제 적용 후) 기준 36.1% 수준이고, 총상속재산가액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속건(16,727명, 83.9%)에 대한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기준 6.9%¹⁰⁾, 과세표준 기준 18.7%¹¹⁾에 불과함.

[2023년 총상속재산가액별 상속세 실효세율]

(단위: 백만원, %)

총상속 재산가액	피상속인 수	상속세 과세가액 (A)	과세표준 (B)	총결정세액 (C)	실효세율 (C/A)	실효세율 (C/B)
계	19,944	53,230,138	34,031,387	12,290,143	23.1	36.1
1억 이하	84	4,971	3,149	91	1.8	2.9
3억 이하	312	60,710	39,055	1,209	2.0	3.1
5억 이하	239	90,673	56,201	2,932	3.2	5.2
10억 이하	5,026	3,527,079	976,412	110,177	3.1	11.3
20억 이하	8,305	10,702,313	3,519,225	612,206	5.7	17.4
30억 이하	2,761	5,979,985	2,885,847	675,378	11.3	23.4
50억 이하	1,928	6,454,590	3,705,596	1,052,511	16.3	28.4
100억 이하	850	5,132,936	3,398,380	1,173,508	22.9	34.5
500억 이하	402	6,487,369	5,137,024	2,064,695	31.8	40.2
500억 초과	37	14,641,782	14,228,104	6,587,034	45.0	46.3
경정		147,731	82,396	10,40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작성

10) 총상속재산가액 30억이하의 결정세액 합(1,401,993백만원) / 과세가액 합(20,365,731백만원)

11) 총상속재산가액 30억이하의 결정세액 합(1,401,993백만원) / 과세표준 합(7,479,889백만원)

또한, 소득세와 상속세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이를 통해 축적한 재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세제로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재분배기능 측면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조세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부담 수준은 높지만, 소득세 부담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것임.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국제비교]

연도	2013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3.6	4.9	4.8	5.2	6.1	6.6
G7 평균	9.3	9.7	9.7	10.0	10.2	10.4
OECD 평균	7.7	7.9	8.0	8.3	8.3	8.2

자료: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셋째,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의 완화 및 기업승계 지원이 부유층의 투자 및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는 불확실하고, 오히려 재분배기능의 약화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 간 기초부존자원의 차이가 ‘기회의 평등’을 제약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따른 불공평이 사회적 결속력과 역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은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

이 낮아진다는 일부 연구결과¹²⁾ 등을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순환과 작동에 필수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경제주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경제주체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불공평으로 인한 기회의 제약이 사회적 창의와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관하여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 국제적 동향,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12)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